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0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황정아·조인철·박홍배

장철민 · 문금주 · 노종면

황명선 • 주철현 • 김 현

모경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	
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	
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	
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	
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	
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	
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	
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u>202</u>	<u>202</u>
<u>4년 12월 31일</u> 까지 감면한다.	9년 12월 31일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2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 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 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4년 12월 31일</u>까지 감면한 다.

- 1. 2. (생략)
- ③ (생 략)

2029년 12월 31일
1 . 9 (청해고 가으)

- 1.·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